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20호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 등(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급절차 및 환수(안 제6조 및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64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rhdchfhd@korea.kr

붙임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시술”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3.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2.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여성은 강릉시에 6개월 이

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지원대상자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받아야 한다.

③ 의료기관은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